

제5차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
안건 ②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

2026. 5. 28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현황 및 문제점	2
1. 매입채권추심업 현황	2
2. 매각 관행 및 시장 현황	3
3. 문제점	4
III. 허가제 전환 방안	5
1. 기본 방향	5
2. 세부 방안	6
IV. 향후 일정	8

I. 추진 배경

- 매입채권추심업은 대부업*의 세부등록단위로, 금융회사·대부업자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하는 업종
 - *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금전대부업과 매입채권추심업으로 구성
 - '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NPL) 정리 과정에서 나타나 '09년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등록제'로 제도화
 - 이후 등록요건을 상향*하고 추심행위에 대한 규율을 지속 강화
 - * 1) (등록감독기관) 지사체→금감원, 2) (자기자본) 5천만원→3억원('16년)→5억원('18년)
 -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건전성을 제고하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신제도의 지속가능성에 기여
 -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도 유사하게 추심 업무를 하나, 원채권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하고 '허가제'라는 점에서 차이
- 매입채권추심업은 대출제도에서 중요한 후단 기능을 담당하나, '등록제'로 최근의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기에 근본적인 한계**
 - *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채무자의 '회생·재기'와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간 조화
 - ** 등록제가 신용정보회사(허가제)와의 규제 차이 및 장기·과잉 추심구조·관행 등 형성
 - 사실행위로서 추심뿐만 아니라 법조치*도 가능한 만큼 채권자 권리를 부당 행사·남용하지 않도록 강력한 자기 규율 필요
 - * 법원에 집행권원을 얻어 계좌압류, 채무불이행자 등록, 유체동산 압류 등 가능

※ 민원 사례('25.11월 금감원 민원)

- 10년전 카드대금 연체 후 연체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감.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고초를 겪었으나, 7년이 지나 신용불량이 풀려도 민원인 명의 통장을 만들수 없음. 2년 전부터 통장을 만들면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한 달이 채 안되 압류가 들어옴. 압류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살 수도 없음

- 정성적인 심사가 없어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없고, 영세 업체 난립으로 금융감독에 의한 외부규율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

⇒ 시장에 만연한 장기·과잉 추심관행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매입채권추심업 구조 조성을 위해 허가제로 전환 추진

Ⅱ. 현황 및 문제점

1 매입채권추심업 현황

- **(등록 현황)** '25년말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 수는 911개이며, 매입 연체채권을 보유한 매입채권추심업자는 498개(55%)

* 매입채권추심업 전업사 241개, 금전대부업·매입채권추심업 겸업 670개사

- 498개사 중 연체채권을 100건 이상 보유한 업자는 177개사로 상위 30개사의 보유잔액 비중은 전체의 86%(매입가 기준)
- 평균 자산(매입채권 자산 포함)은 408억원, 평균 자기자본은 100억원, 평균 임직원의 수는 6명 수준('25년말 기준)

- **(보유 연체채권 현황)** '25년말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보유한 매입채권* 잔액은 22.4조원(액면기준 67.8조원)이며, 매입가율**은 36.1%

* 1)대출 주체에 따라 개인/법인으로, 2)담보 유무에 따라 신용(무담보)/담보/기타로 구분

** 매입가율=(최초 매입시 매입가/액면가)*100로, 채권원금 대비 얼마에 샀는지 나타냄

- 매입가율 상승 추세는 연체채권 자체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 전체 잔액 중 매입가율이 높은 담보채권 비중이 높아진 영향으로 판단
- 개인 무담보(신용) 연체채권의 경우 잔액 7.2조원(매입가율 26.1%, 채무조정채권 및 개인회생채권 포함)

< 매입채권추심업 보유 연체채권 잔액 추이(단위: 조원, %) >

구분		'18말	'19말	'20말	'21말	'22말	'23말	'24말	'25말
매입기준		4.3	4.7	5.3	5.9	6.9	9.9	16.2	22.4
액면기준		36.3	40.5	42.8	43.7	44.6	46.5	59.3	67.8
매입가율		15.5	15.2	16.6	18.6	19.5	24.4	29.9	36.1
개인 무담보	매입기준	3.0	3.3	3.7	4.0	4.7	6.0	6.9	7.2
	액면기준	20.1	24.4	25.4	26.8	27.2	35.6	37.8	33.2
	매입가율	17.0	17.0	18.2	19.9	21.0	23.4	21.8	26.1

- **(매입·매각)** 상위 30개사는 주로 은행·저축은행·여전사에서 연체채권을 매입('25년중 5.9조원)하고, 다른 업자에 일부 매각(1.9조원)

< 상위 30개사 연체채권 매입·매각처 현황(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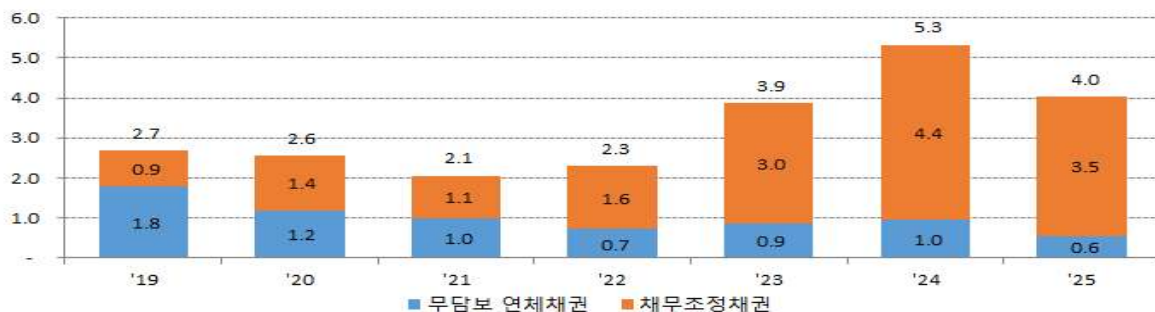
구분	매입처						매각처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대부업	AMC	기타	소계	대부업	캠코*	기타	소계
'23년	0.5	2.7	1.5	1.2	0.9	0.0	6.8	0.4	0.1	-	0.5
'24년	0.6	2.4	2.7	0.7	0.1	0.1	6.6	0.4	0.2	-	0.7
'25년	0.8	1.6	1.5	1.5	0.4	0.1	5.9	1.1	0.2	0.6	1.9

* 매입채권추심업자는 채권 소각을 위해 명목액(1원)만 받고 캠코에 매각하여 소각 처리

2 매각 관행 및 시장 현황

- 연체채권은 ①무담보 연체채권, ②채무조정·회생채권 및 ③담보채권 등 채권 유형에 따라 매각·매입 행태에 차이
 - 대출자산이 다각화되어 있고 총당금 적립 규모가 큰 시중은행과 같은 경우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기도 하나,
 - 대다수 금융회사는 건전성 제고¹⁾, 총당금 비용 절감²⁾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출자산 운용 과정에서 연체채권을 매각
 - * 1) (건전성 제고) 연체율, 고정이하 여신 비율 등 지표 관리, 2) (총당금 비용 절감) 연체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총당금 설정(연체액의 10~99%) → 매각시 환입
- 무담보 채권 중심으로 거래되던 시장은 코로나19 협약*과 시장 참여자 확대에 따라 채무조정·회생채권 중심으로 변화
 - * 코로나19 신용지원 협약에 따라 '20.2월 이후 연체가 시작된 개인 무담보대출에 대한 제3자 매각을 제한하고 불가피할 경우 캠프에만 매각을 허용('20.6월~)
- ① (무담보 연체채권*) 코로나19 이후 무담보 연체채권 매각이 제한되면서 거래규모 감소 (⇒ '20.2월 이전 연체된 채권 등 일부 거래)
 - * 통상 연체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원채권액의 10~20%에서 거래
- ② (채무조정·회생채권*) 코로나19 이후 채무조정(개인회생)이 늘고 금융회사도 총당금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대외 매각**
 - * (채무조정채권) 상환예정액의 60% 정도, (회생채권) 80% 정도 가격에 거래
 - ** 채무조정·회생채권은 신청 시점부터 추심이 중단되므로 연체에 따른 과잉·불법 추심에 대한 우려가 없어 코로나19 신용지원 협약상 제3자 매각이 허용
- 신규 무담보 채권 매입을 못한 매입채권추심업자와 캐피탈사·자산운용사가 시장에 적극 참여하면서 최근 거래규모가 증가
- ※ ③ (담보채권)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가 있는 대출채권은 UAMCO, 대신F&I 등 NPL전문회사(AMC)에 매각(유동화 방식)을 통한 회수가 활성화

< 연도별 개인 연체채권(담보채권 제외) 거래 규모(단위: 조원) >



3 문제점

- **(규제 차익)**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할수록 이익이 되는 매입채권추심업은 업의 본질*상 **엄정한 규율이 필요**하나,
 - * ①사실행위로서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추심뿐만 아니라, ②채권자로서 계좌압류 등 법조치를 통해 채무자를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가능
- '등록제'로 업의 진입과 영위에 사실상 제약*이 없어 **근본적으로 채무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
 - * (등록요건) 법인, 자본금 5억원, 고정사업장,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 오히려, 법조치를 할 수 없고 추심만 가능한 **채권추심업**(신용정보회사)은 '허가제'로 되어 있어 "유사 기능, 다른 규제" 상황
- **(장기·과잉추심 유발 구조)** 낮은 진입장벽(등록제)으로 영세업체*가 난립해 장기·과잉추심이 유발되는 구조
 - * (매입채권추심업체) 911개사의 평균자산 408억원(연체채권 포함), 평균 임직원 6명
↔ (채권추심회사) 22개사의 평균자산 746억원(연체채권 없음), 평균 임직원 776명
- 영세업체 난립이 추심업자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연체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추심 강도가 높아지거나,
 - 수익성 확보를 위해 장기 보유 후 추심 또는 재매각 조치
- 등록제 하에서는 **평판·민원이나 시장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채권회수 행위***도 가능
 - * (예) 연체 채무자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서 은행계좌 개설 추정 정보를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신규 은행계좌를 압류하여 사실상 경제활동을 못하게 압박
- **(실효적인 관리·감독 불가)**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금융당국의 실효적인 관리·감독도 사실상 불가*
 - *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3개사 검사, 911개 업체를 다 검사하려면 40년 소요
- 민감한 연체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영세성으로 인해 **전산설비·보안 투자가 미비하여 해킹에 구조적으로 취약**

※ '25.8월 웰릭스F&I대부*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내부정보가 다크웹에 유출
☞ 직원PC가 랜섬웨어에 감염되고, 이를 통해 파일서버 등의 관리자 권한 탈취

* '25년말 자산규모 약 1조원, 자기자본 1,370억원의 대형 매입채권추심업체

Ⅲ. 허가제 전환 방안

1 기본 방향

비전	채무자 보호가 작동하는 매입추심 생태계 조성
목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 건전한 지배구조 및 영업 방식을 갖춘 우량업체 중심으로 업을 재편
전환 방향	① 규제 차익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추심업 수준의 허가요건 도입 ■ 매입채권추심업-채권추심업간 이원화 체계 유지
	② 전문화·채무자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업무·대출중개업 등 타업무 겸영 제한 ■ 연체채권 매입 관련 민사상 특례 검토
	③ 연착륙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에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 허가취득 없이 유예기간 만료시 보유채권 6월내 매각
<p>< 기대 효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 업체가 퇴출되고 장기·과잉 추심을 스스로 억제하는 업무 관행이 형성되어 채무자 보호 안전망 강화 ◇ 전문화와 채무자 보호 내재화로 질적 성장 도모 	

2 세부 방안

[1] 허가 요건

□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추심업과 유사하게 추심업으로 하는 특성을 고려, **채권추심업 수준의 허가요건***을 도입

* 1) 금융회사가 50% 이상을 출자, 2)자본금 30억원, 3)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4) 대주주 요건(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5)전문성 등

□ 다만, 위탁이 아닌 매입하여 추심업을 영위하는 점을 고려하여 **임·직원 및 물적설비 요건은 강화**

○ **(인적요건)** 제3자 추심으로 강제집행 등 범조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 등 전문인력 5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

- 임원 뿐만 아니라 **직원도 높은 적격성***을 갖추도록 요구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 경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신용정보법 등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 받고 5년 경과 등

○ **(물적요건)** 다수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산보안설비 요건** 등을 강화

<매입채권추심회사 허가요건(안)>

구분	현행	개선	(비교)채권추심업 허가요건
인허가	• 등록제	• 허가제	• 허가제
금융회사 출자·법인	• 법인	•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자본금	• 자기자본 5억원	• 자본금 30억원 ¹⁾	• 자본금 30억원
인력·물적 요건	• 대부업 등을 위하여 고정사업장을 갖추는 것	• 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 ²⁾ 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³⁾ 을 갖추는 것	• 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는 것
사업계획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대주주	• 대주주가 사회적 신용 을 갖추는 것	• 대주주가 충분한 출 자능력, 건전한 재무 상태 및 사회적 신용 을 갖추는 것	• 대주주가 충분한 출 자능력, 건전한 재무 상태 및 사회적 신용 을 갖추는 것
임직원	• 임원·업무총괄사용인이 높은 적격성을 갖추는 것	• 임·직원이 높은 적격 성을 갖추는 것	• 임·직원이 적격성을 갖추는 것
전문성		• 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	• 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

1) '25년말 현재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인 매입채권추심업자는 195개사(社)

2)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 + (강화) 전문인력 5인 이상 포함

3) 신용정보 등의 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강화) 민감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처리·통신 설비

[2] 업무 규율

□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영하거나 부수업무로 영위 금지(☞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

* 현재 매입채권추심업(대부업)은 사행산업, 단란·유흥주점, 다단계판매업 등을 제외하고 겸업이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금전대부업·대부중개업 겸업 금지

- 금전대부업 등 겸업이 금지되므로 금전대부업 겸업을 전제로 부과된 규제*는 타당성을 재검토

* (예시) 사명(社名)에 '대부'라는 명칭 포함, 2금융권 자금 차입 관련 규제 등

○ 다만, NPL유동화업무 등 매입채권추심업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거나 부대되는 업무*는 허용

* 1)인수한 부실채권의 보전·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조사, 2)인수한 부실채권의 처리를 위한 업무(담보 부동산 취득,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인수 등) 등

□ 채권추심업-매입채권추심업간 이원화 체계를 당분간 유지함에 따라 채권추심업자의 채권매입추심업 겸영도 불가

□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낮은 비용으로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체채권 매입 절차 관련 민사상 특례* 검토

* (예시) 채권양수 통지, 저당권 취득이나 경매 절차에서의 통지 특례 등

※ (참고) 현재 농협은행·농협조합·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거나 매입하여 정리(추심)하는 농협자산관리회사·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등도 연체채권 매입통지, 저당권 취득 통지 등에서 민법상 특례가 허용되어 있음

○ 관리비용 절감시 추심 강도를 낮출 수 있고, NPL전문회사(AMC) 등도 매입채권추심업에 진입할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

□ 매입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등 관련 사항을 업무에 내재화

※ 「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의 내용(발췌)

- 중증환자 등 사회적 생활부조 필요시 채권추심 금지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 및 매각 등 금지
- 채권과 관련한 법조치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 원채권 금융회사의 매입 업자에 대한 점검 협조, 매입한 채권을 불가피하게 재매각시 원매매계약상 재매각 관련 약정사항 준수 등

[3] 전환 기간

- 법개정 이후 새로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규정
- 다만,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는 업을 영위하면서 새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시행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의 경우, 유예기간 중에는 허가요건 중 '금융회사 50% 출자 요건'은 미적용
 - 유예기간 중 등록유효기간 만료시 한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등록유효기한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함
- * 현행 대부업법은 매입채권추심업자(금전대부업자 포함)로 하여금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만료 3~1개월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함
- 단, 대출업무·대부중개업 겸업 금지는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도 법시행시 바로 적용
- 전환 계획이 없는 기존 업자에 대해서는 법시행후 6개월내 보유채권 매각·소각 등 정리계획을 제출하여 질서있는 퇴출을 유도
- 허가 취득 없이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된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보유 연체채권은 등록만료 시점부터 6개월 내 소각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매입채권추심업체에 매각*해야 함

* 등록만료에도 불구하고 기한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검토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6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회사 등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료 시점부터 처분할 때까지는 위탁의 방법으로만 추심할 수 있음(법 §23)

IV. 향후 일정

- 업계 간담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대부업법 개정안 마련(8월)
- 대부업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입법추진(~12월)